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청렴도 관련 공공재정지급금 특정감사 -

2023. 9.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시 정	주 의	권 고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경 징 계	훈 계
계		1건	1	0	0	1	600	-	-	-	-	-	-
1	AAAAAA과	OOOOOOO 지원사업 집행 부적정	1			1	600						

## ② 처분요구일람표

1. ○○○○○○ 지원사업 집행 부적정 (시정) ..... 1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지원사업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AAAA과  
내 용

경상북도 AAAAAA과에서는 ◇◇ ◇◇·◇◇ ◇◇ ◇ ◇◇◇ ◇◇ 및 ◇◇◇ ◇◇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2021년 ○○○○○○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사업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2021	BBBBBBBBBB	30,000	30,000	0	-◇◇◇◇◇◇ ◇◇(◇◇◇, ◇◇◇◇ 등)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5호)」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에 의하면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을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AAAAAA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교부결정 사업계획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면서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전에 시행된 사업에 대한 집행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BBBBBBBBBB에서 [표 2]와 같이 □□□□□□ □□ 경비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1회)과 다르게 해당 사업연도 □□□□□□ □□ 수수료 이외에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전년도 □□□□□□ □□에 소요된 수수료까지 보조금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해당 내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 등의 시정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였다.

[표 2] 보조사업 용도 외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교부결정 사업계획	집행 현황				비고
	내용	시행일 (세금계산서일자)	지급일	지급액	
□□ □□□□□ □□ 600,000원 × 1회	2020년(전년도) □□□□□ □□	2021. 2. □.	2021.5.□.	600,000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전 시행건 소급집행)
	2021년(당해연도) □□□□□ □□	2021. 12. □.	2021.12.□.	1,000,000	정상 사용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 2021. 4. □.

그 결과, 당초 교부결정된 용도 외 목적으로 보조금 600,000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AAAAAA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이 당초 사업 계획 및 교부결정된 용도로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된 보조금 600,00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